

별첨 6

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내용

장애유형(장애정도)			필기시험	면접시험
지체장애	상지 지체	공통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관련서식 확대 제공
		장애정도가 심한 자	· 시험시간 1.5배 연장 · 답안지 대필(선택형 시험)	
	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-
	하지지체		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
뇌병변장애	공통	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관련서식 확대 제공
	장애정도가 심한 자		· 시험시간 1.5배 연장 · 답안지 대필(선택형 시험)	· 개별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	· 시험시간 1.5배 연장 * 의사 진단서 1부	· 공통 편의지원
시각장애	공통	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관련서식 확대 제공
	장애정도가 심한 자	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1.7배 연장 · 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 * 의사 진단서 1부	· 관련서식 점자 지원 · 음성지원 컴퓨터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좋은 눈의 시력이 0.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1.5배 연장	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 시험시간 1.7배 연장 · 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 * 의사 진단서 1부	· 관련서식 점자 지원 · 음성지원 컴퓨터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	· 관련서식 점자 지원 · 음성지원 컴퓨터
		좋은 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1.5배 연장 * 의사 진단서 1부	· 공통 편의지원
		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, 좋은 눈의 시력이 0.3이하인 사람		
청각장애	공통		· 수화통역사 배치 ·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,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·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· 의사전달보조요원 · 필담면접, 의사전달용 컴퓨터 · 관련자료 서면제공

장애유형(장애정도)		필기시험	면접시험
기타	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	·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*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(검토 후 안내)	·장애정도 검토 후 안내
	임산부	·높낮이 조절 책상 ·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·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(의사 소견서 1부)	·높낮이 전용책상 ·전담도우미 지원

※ 「장애인복지법」 시행규칙 기준으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해당 여부 선택

※ 증빙자료(의사진단서 등)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시험일 이전에 제출

※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

1. 발급기관: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

※ 반드시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
2. 발급일자: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(원본)

3.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

①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

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
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
- 장애유형 및 중·경증 여부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
예시) 점자문제지,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

- “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”

-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